

信用狀 去來에 있어 信義誠實 原則의 適用에 관한 考察

신 군 재* · 김 경 배**

-
- I. 서론
 - II. 신용장거래원칙과 신용장통일규칙
 - 1. 신용장거래원칙
 - 2. 신용장통일규칙
 - III. 신의성실의 원칙
 - 1. 신의 성실원칙의 기본개념
 - 2. 신의 성실원칙의 적용범위
 - 3. 신의성실 원칙의 한계
 - IV. 신용장분쟁의 신의성실원칙 적용 판례분석
 - 1. 개설은행과 수익자·매입은행간 적용사례
 - 2.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과의 적용사례
 - V. 결론
-

I. 서론

신용장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해주는 약속서를 말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수출상과 수입상의 계약관계나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만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의 수출상, 수입상 및 은행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물품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서 클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정보학과 전임강사

** 대한상사중재원 전문위원, 경영학박사

래임 발생시 책임관계나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일규칙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의 책임관계나 해석원칙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국제통일규칙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분쟁해결의 최종 해결기관인 각국 법원은 자국 법에 따라 동 통일규칙의 적용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민법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원칙이나 신용장통일규칙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역실무자들에게 신용장거래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원이 민법의 큰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용장거래에서 어떻게 적용하였는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신용장거래원칙과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거래원칙

(1) 독립·추상성의 원칙

독립성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이란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the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은 관념적 및 실제적으로 신용장 계약(letter of credit contract)과는 별도의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또는 기타 신용장 발행에 근거가 되는 계약상의 조건을 이유로 제기하는 클레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신용장의 추상성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of the credit)이란 신용장거래의 모든 당사자는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 아닌 이를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추상성원칙에 의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는 신용장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 은행에 신용장에 의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은행은 수출상이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인지를 검토하여 서류만으로 대금지급여부를 해야 한다.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조건에 따른 이행을 요청한 소송인 Union Engineering Co. v. Titan Industrial Corp.의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장은 그 근거계약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수익자는 개설의뢰인을 상대로 신용장조건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¹⁾. Blodgett과 Wilson(1993)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이행의 완성도(the degree of completion)와 그 질(quality)은 은행의 지급 등의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²⁾.

(2) 서류심사의 원칙

신용장의 거래에서 관계당사자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책임여부는 오직 서류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서류를 심사하는지의 심사기준을 서류심사원칙이라고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은행은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고, 규정된 서류의 심사는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도록 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³⁾. 이는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고 서류의 일치성 심사를 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수리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한 은행은 서류가 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은행이 어떻게 서류

1) No.83 Civ.6369(CSH)(S.D.N.Y. June 27, 1985)

2) Marks S. Blodgett & Jerry W. Wilson, "The Impact of Transaction Fraud: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Review of Business」, Spring 1993, Vol. 14 Issue 3. pp. 42~47.

3) UCP 500(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4) 서정두, "회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수리거절권의 상실이유", 무역상무연구제1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7.2, p.378

를 심사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서류심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각국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각국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류심사의무는 엄밀일치주의⁵⁾와 상당일치주의⁶⁾로 나뉜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제5차 개정안에 국제은행표준관행이라는 명시를 하고, 2002년 10월 추가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ISBP⁷⁾)을 공표하였다.

2.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에서 클레임이 발생되면, 각 국은 서로 자국의 고유한 법과 관습에 의해 용어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33년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제5차 개정을 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민간기구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상에 "화환 신용장을 위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적용을 받는다(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UCP)"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상과 개설은행간 신용장발행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용장발행신청서나 수출상과 개설은행간 신용장계약의 성격을 갖는 신

5) 엄밀일치주의(doctrine of strict compliance)는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라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엄격히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개설은행을 보호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6) 상당일치주의(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조건 사이에 형식적인 불일치가 존재하여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시서류에 의해 신용장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일치로써 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은행이 선의와 합리적 주의로써 행동하는 한, 신용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금결제 메카니즘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7)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 환어음,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하여 총 11장 91절 200항목의 세부적인 서류심사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적 고려사항으로 불명확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그 위험 부담을 하도록 하였다.

용장의 문면상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수한다는 준언문언을 삽입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관계당사자간 이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한다. 따라서 Gutteridge & Maurice(1984)는 동 규칙은 법률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하였다⁸⁾.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Ⅲ.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1) 신의성실 원칙의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⁹⁾. 이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자기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윤리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윤리적 성격을 가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서는 자들에 대한 행위준칙이자 동시에 법원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¹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무를 그의 사회적 사명(사회성·공공성)하에서 관찰해야 한다는 사법이념의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선언한 것으로서 일정한 가치의 보충을 요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성실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조 1항은 마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

8) Gutteridge, H.C., and Maurice,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td., London, 1984, p.6

9) 김재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이론", 서강논집 제14집, 2002, pp.181-182.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p.44.

은 실제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의 기능¹¹⁾, 권리·의무의 창설적 기능¹²⁾, 법률의 흠결보충적 기능¹³⁾ 및 법수정적 기능¹⁴⁾ 등을 가지고 있다.

(2)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신의성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for Goods : CISG)에서는 신의성실을 일반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협약의 해석원칙으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¹⁵⁾.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의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에서는 일반요건으로서 신의성실을 규정하고 있다¹⁶⁾. 이외에도 많은 국제협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¹⁷⁾.

-
- 11)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구체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또한 법률의 의미내용(민법 제529조의 상당한 기간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해석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
 - 12) 신의성실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일정한 채권관계의 양당사자는 기본적인 담부의무 이외에 채권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수적인 의무(설명 의무, 주의 의무 등)를 부담하게 된다. 판례는 “동일한 보험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그와 같은 약간변경 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성실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신의성실에 기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였다.
 - 13) 신의성실은 제정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즉 해결을 요하는 어떠한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의미내용을 가진 법규가 없는 경우에 법률의 흠결이 있게 되고 법원은 법률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흠결은 보충을 요한다. 그 경우 법률의 흠결은 다른 보충수단이 없는 경우엔 신의성실에 의하여 보충될 수도 있다.
 - 14) 신의성실은 경우에 따라서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 특정법규의 의미내용에 포섭될 수 있지만 그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이 실현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신의성실을 근거로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법규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 15) CISG 제7조
 - 16) Unidroit Principles Art 1.7(Good Faith and Fair Dealing)
 - 17) The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of 1988, 제4조 1항, The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of 1988, 제6조 1항, The UN conventi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of 1955, 제5조, The UN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of 1996, 제3조 1항, The 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The Hamburg Rules) of 1978, 제3조, The UN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f 1974 in version of the Protocol of 1980, 제7조.

배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경상논총 제

국제거래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의 기준은 특정 국가의 국내법상의 신의성실의 기준은 적용될 수 없고 오직 국제무역에서의 요구와 특별조건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거래분야에 있어서도 널리 통용되는 신의성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랫동안 해왔던 거래관행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업계, 중재인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¹⁸⁾. 국제무역에서 신의성실원칙은 국제무역의 당사자들의 행위와 국제협약과 계약의 해석 등에 있어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신의(honest), 합리성(reasonableness), 공정거래(fair dealing),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estoppel), 자신의 행동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금지원칙 등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범위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나라 민법의 제2조에 규정함으로써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채권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법상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행위규범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인간 사이의 어떤 법적인 결합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는 계약 등의 채권관계 기타 일정한 사회적 접촉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¹⁹⁾ 따라서 그러한 관계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의 설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신의성실에 의해 판단되기 보다는 민법 제103조²⁰⁾

18권 1호, 한국경상학회, 2000.6, p.165.

18) Ulrich Magnus, "Remarks on the Good Faith, Editorial Remarks"(http://www.cisg.law.pace.edu/cisg /principles/uni7.html)

19) 백태승,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원리에 대한 판례의 태도(상)", 판례월보 289호, 1994.10, p.49

20)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의 선량한 풍속위반이나 제750조²¹⁾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²²⁾.

그리고 이러한 법적 특별결합관계 내지 사회적 접촉관계가 존재하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법 등 사법영역은 물론 노동법·경제법 등 사회법과 행정법·소송법 등의 공법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²³⁾.

3. 신의성실 원칙의 한계

신의성실은 법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 형평규범이라고 한다. 예컨대 판사가 추상적인 신의성실에 의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²⁴⁾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판결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 규정이 그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유추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규정의 적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법률관계의 의미에 모순되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 즉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극히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에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 신의성실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은 이익 수량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 형평규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²⁵⁾.

(1) 법률의 흠결보충의 허용한계

신의성실에 의한 법률의 흠결보충은 제일차적인 보충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21)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

22) 김재윤, 전제논문, p.183.

2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24) 헌법 제103조

25) 양형우, “채산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연세법학회, 2001, p.219.

최후적인 보충방법이다. 이는 법률의 적용과 법률의 흠결보충에 관한 일반이론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에 의한 법률의 흠결보충은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에 의한 법률의 흠결보충은 법률과 조화되는 법명제에 의한 흠결보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경우 법률과 조화되는 법명제에 의한 흠결보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을 우선 적용하게 되면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²⁶⁾.

(2) 신의성실에 의한 법률수정의 한계

신의성실의 법률수정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신의성실의 이름으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률의 구속력은 부인되고 법적 안정성 역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에 의하여 법률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내지 상황으로 보아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에 의한 법률의 수정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IV. 신용장분쟁에 신의성실원칙 적용 판례분석

1. 개설은행과 수익자·매입은행간 적용사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²⁷⁾

26) 서광민,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고시연구, 1996.6, p.83.

2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 687 신용장대금

1) 사건개요

소의 라미실업(주)이 일본 소재 소의 크라운(주)로부터 프린트 복사지의 의장도안에 사용되는 스킷치 페이퍼를 수입하면서 피고은행(개설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자 피고은행은 1981. 10. 2. 위 크라운(주)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크라운(주)은 원고은행에 환어음대금을 매입하였다.

원고은행(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은행의 서울지점에 제시하였으나 피고은행은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 차이,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개설의뢰인의 명칭 차이 등의 불일치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매입은행)은 금번 지급거절 이전에도 15차례에 걸쳐 동일·유사한 불일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해서만 지급거절을 한 것은 신의성실상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개설은행)는 이전에 불일치한 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행한 것은 개설의뢰인의 지급지시에 따른 것이며,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왔다고 하였다.

2) 판결요지

수익자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일치한 서류를 피고(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은행으로서 위와 같은 불일치가 있는 이 사건 상업송장 등 서류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를 수익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개설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이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²⁸⁾

1) 사건개요

원고(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1994. 8. 23. 한국 수입상인 A에게 미화 208,520불 상당의 바지 13,000장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개설은행)는 같은 해 9. 16.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3차례에 걸쳐 바지 5,600장을 각 선적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들과 함께 중국 J은행을 통해 피고은행에 지급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해 위 서류들이 신용장조건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그에 상당하는 각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은행은 4차 선적분인 바지 3,950장, 대금 미화118,696불에 대하여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L/G발급요청이 없었고,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요청이 있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신용장의 수익자인 원고는 피고은행에게 “3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의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은행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은행의 계속적인 지급을 신뢰하였으므로 4차분에 대하여만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신용장개설은행이 3차례의 선적분까지의 신용장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업 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사본들만을 제시받고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의 선적분도 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그에 따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신용장개설은행

2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54017 판결

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에 지급한 것은 L/G발급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G가 발행되지 않는 4차 선적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3) 사례검토

신용장통일규칙의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²⁹⁾, 서류심사 원칙³⁰⁾ 및 상업송장에 관한 규정³¹⁾ 등에 의하여 위의 첫 번째 사례를 살펴 보건데,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불일치하거나,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개설의뢰인의 명칭 차이 등의 불일치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국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제상학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신용장거래는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당사자자치원칙³²⁾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신용장통일규칙은 각국의 자국법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막고,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신용장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이다. 이러한 취지로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들은 신용장문면상에 “This credit is subject to ICC Publications No.500”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해석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명문규정인 신용장통일규칙에 적용한다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신용장통

29) UCP 500 제3조(신용장과 계약)와 제4조(서류와 물품/서비스 이행)

30) UCP 500 제13조(서류심사의 기준)

31) UCP 500 제37조(상업송장)

32) 우리 나라涉外사법에서도 당사자자치원칙이 적용되고 있다.涉外사법 제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이상 개설은행이나 수익자 및 매입은행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권익을 위하여 선의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하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로서, 스위스의 항소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³³⁾. 셋째, 신용장에서 지급약속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급약속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기한 항변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³⁴⁾. 넷째,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목적은 거래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은행을 보호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원활화를 꾀하는데 있다. Schmitthoff(1980)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조항에 따라, 매수인을 가름하여 대금의 지급을 행하는 agent이며, agent인 이상 신용장의 조항을 준수하여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주어진 권한을 소홀히 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의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³⁵⁾. 따라서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고객인 개설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다. 만약 과거에 불일치한 서류에 대하여 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이 지급에 대한 의무를 진다면 수출상이 악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활용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하겠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신용장개설은행이 3차례의 선적분까지의 신용장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사본들만을 제시받고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개설

33) 인도의 수출상과 수입상간 에틸알코올 거래에서 수출상이 제출한 하자있는 서류에 대하여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면서, 물품은 변질되기 쉽고, 운송이나 저장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수익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수를 하였다.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의 통지를 받은 매입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서류의 처리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취리히의 상업재판소(Tribunal de Commerce)나 항소법원인 스위스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개설은행은 UCP 400의 제16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박대위, 「무역사례 I」, 법문사, 1995, pp. 236-238)

34) 서헌제, 국제거래법제2판, 법문사, 2000, p.257

35) Schmitthoff, Clive M., The Export Trade, Seventh Ed., 1980, p.248

은행이 선박회사에 L/G를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개설은행이 L/G를 선박회사에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당해 서류의 인수와 동일한(equivalent to acceptance)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보증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3차 선적분과는 달리 4차 선적분에 대하여는 개설의뢰인의 L/G발행요청이 없어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무역의 관행상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 적용사례

(1) 신의성실원칙을 인정한 판례³⁶⁾

1) 사건개요

원고(개설의뢰인, 수입자)는 프랑스 소재 소의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파니 리미티드로부터 고풍탄 3,000발을 미화 1,524,000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피고(개설은행)에게 의뢰하면서 신용장대금을 예치하였다. 수익자인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파니 리미티드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통지은행인 F은행 파리지점에서 매입을 의뢰하였고, 매입은행인 F은행은 ① 원고와 피고에게 선적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② 이행보증서가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50일이 지나서야 발급되었으며, ③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지정된 운송주선인이 아니었고 신용장과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상 도착항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면서 피고은행에 매입여부를 문의하였다.

피고은행은 ①, ②항의 불일치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①의 불일치점은 원고에게 통고하고 ②항의 불일치점은 별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③항의 불일치점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통고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통고받은 ①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

36)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6114 판결

고 판단하여 선적지연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선적서류의 인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은행은 지체상금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신용장 예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2. 12. 말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아무런 확인 조치없이 방치하던 중 수익자가 화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난 1993. 8. 11.에서야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화환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 사항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하는 등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 사항이 그로부터 개설의뢰인의 수익자와의 계약 및 신용장 거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에도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였거나 신용장개설계약 과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³⁷⁾

1) 사건개요

원고(수입상, 신용장 개설의뢰인)는 1990. 11. 22. 프랑스 E회사(수출상)로부

37)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 49750 판결

터 고평단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개설은행)에게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의뢰 하였으며 피고은행(개설은행)에 미화 3,617,880불을 예치하였다. 피고는 1992. 12. 16. 통지은행인 피고의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매입에 응할 것을 먼저 지시하였고, 통지은행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서류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담당직원에게 이러한 하자의 일부를 통보하면서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파리지점에 상환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물건은 선적된 바가 없음이 확인되자 원고는 1992. 12. 29. 피고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은 지 약 7개월이 지난 1993. 8. 11. 피고 개설은행을 상대로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 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에는 개설의뢰인이 비록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에 따른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³⁸⁾.

38) 본 판결의 반대의견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였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서류를 조사하여야 하고 거기에 신용장의 문면이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바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

3) 검토의견

위의 두 사례는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인수받고, 8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용장예치금의 반환청구를 한 사건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은행(개설은행)이 불일치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통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선적서류를 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지급행위는 개설신청서상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개설의뢰인이 제시한 서류를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이 8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선적서류의 불일치로 신용장예치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 역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동의없이 사전 지급지시를 한 이유로 개설의뢰인의 상당한 기간내에 서류검토의무를 해태한 것까지도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개설의뢰인도 서류를 인수할 때에는 서류의 불일치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과실을 이유로 이 의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은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장통

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으로서 더 이상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일규칙에서는 개설은행은 불일치서류가 있을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그 불일치에 대한 권리포기 여부를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Busto(1993)는 개설의뢰인과의 교섭은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가 있으면 불일치서류의 거절을 결정하는데, 개설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서류검토의무는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에게도 주어지며, 개설의뢰인도 서류를 인수할 때 서류를 검토하여 대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가능한 빨리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판례에서는 개설은행의 잘못으로 신용장 조건과 상이한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하였으나, 개설의뢰인이 부주의로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서류를 인수하였다면 사후에 개설은행에 그러한 하자가 발견되어도 지급거절이나 예치금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⁴¹⁾. 둘째, 신용장은 국제매매당사자간에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지급확약기능과 금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²⁾.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개정안에서는 이전까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을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라고 규정되어⁴³⁾, 서류 검토기간에 대한 사실상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매우 모호하였던 것을 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다음 날로부터 제7영업일의 마감시간 내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⁴⁴⁾. 비록 신용장통일규칙이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39) UCP 500 제14조(불일치서류와 통지) c항

40) Busto C. D.,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Reasons for the Changes*, 1993, pp.46-47

41) *North Woods Paper Mill Ltd. v.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1953), 121, N.Y.S. 2d, 543에서 법원은 개설의뢰인이 서류를 인수하고, 불일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서류하자의무에 면책이 된다고 하였다. 개설의뢰인은 하자있는 서류를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를 받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물품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하였다. 실수요자가 원래 물품과 다른 물품인 것을 발견하고, 개설의뢰인에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개설의뢰인은 이를 배상해주고, 개설은행에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반환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개설의뢰인은 서류의 하자가 있으면 이를 인수하지 않거나, 발견된 즉시 은행에 서류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든지 기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하였다.

42) 강원진, *신용장론* 제3판, 박영사, 2000.4, p.20

43) UCP 400 제16조

44) UCP 500 제14조(불일치서류와 통지)

책임까지 규율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용장개설신청서상에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서류검토기간도 이 기간에 구속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개설의뢰인의 서류검토의무까지 면책을 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선적서류의 수리를 거절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즉, 개설의뢰인은 도착한 물품이 처음에 수입을 의도하였을 때와는 달리 시장성이 떨어진다 고 판단이 되면 사소한 신용장상 하자에도 인수를 거절할 것이나 만일 시장성이 높아진 경우라면 신용장상의 하자가 크더라도 인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에 대한 점검 및 검토의무가 없다면 독립성과 추상성에 의하여야 할 신용장거래가 상품의 시장성이라는 신용장외의 시장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 대한 은행의 신뢰를 배신하고 개설의뢰인의 권리남용을 허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⁴⁵⁾, 은행의 개입을 억제하여 국제 간 거래의 원활과 거래규모의 확대라는 신용장 제도의 목적을 상실시킬 것이다.

V. 결론

신용장은 국제매매당사자간에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수출상에게는 대금회수를 수입상에게는 물품인도를 보장해줌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대금지급수단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이고, 상품이나 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은행이 개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각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은행은 이러한 거래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는 국제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에는 신용장거래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규칙으로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45) 김현,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확인 의무", 「법률신문」, 1998. 11. 30.

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신용장통일규칙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장분쟁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용장분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나라 법원은 분할선적이나 지속적인 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에 대하여 그리고 개설의뢰인의 서류검토의무기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한 목적이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데 있으며, 국제간의 분쟁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장거래의 기본 원칙인 엄격일치의 원칙에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무너질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은행이 과실이 있을 경우, 개설의뢰인은 서류심사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다면, 은행은 신용장발행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엄격히 서류를 검토하고자 하거나, 신용장거래에 개입하기를 꺼려함으로써 국내 수출입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위험을 갖고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법적 안정성측면이나 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국제거래의 활성화측면에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용장분쟁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없는 사실을 판단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용장거래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거래의 원칙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상입장에서는 신용장조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류작성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입상입장에서는 불일치서류가 도착하였을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은행입장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서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발행신청인과 먼저 교섭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무역실무분야에서 외국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국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신용장거래에 대한 국내법원의 견해를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진, “신용장서류심사를 위한 ICC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9
- _____, 신용장론 제3판, 박영사, 2000.4,
- 김선국,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인정여부”, 법률신문, 2002. 3. 25.
- 김재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이론”, 서강논집 제14집, 2002
- 김 현,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확인 의무”, 법률신문, 1998. 11. 30.
- 박대위, 무역사례 I 제4판, 법문사, 1995
- _____, 무역사례 II, 법문사, 1991
- _____, 무역사례 III, 법문사, 1997
- 배정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경상논총 제18권 1호, 한국경상학회, 2000.6
- 백태승,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원리에 대한 판례의 태도(상)”, 판례월보 289호, 1994.10
- 서광민,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고시연구, 1996.6
- 서정두,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수리거절권의 상실이유”, 무역상무연구, 제1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7.2
- 서헌제, 국제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0,
- 양형우, “재산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연세법학회, 2001
- 유중원, 신용장의 법리, 육법사, 1993
- 임홍근, “영미판례신용장(13)-엄밀일치원칙의 근거”,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 정찬형,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중재, 2003. 가을/제309호, 대한상사중재원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 황적인, 현대민법론 I, 1980
- Busto C. D.,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Reasons for the Changes, 1993
- Gutteridge, H.C., and Maurice,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td., London, 1984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No.83 Civ.6369(CSH)(S.D.N.Y.June 27,1985)

Marks S. Blodgett & Jerry W. Wilson, "The Impact of Transaction Fraud: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Review of Business, Spring Vol. 14 Issue 3. 1993

Schmitthoff, Clive M., The Export Trade, Seventh Ed., 1980

Ulrich Magnus, Remarks on the Good Faith, Editorial Remarks

(<http://www.cisg.law.pace.edu/cisg/principles/uni7.html>)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 687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 59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611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54017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 49750 판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in L/C
Base Transaction**

Shin, Koon Jae · Kim, Kyung Bae

Letter of Credit between buyer and seller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the means of payment which makes International Trade operate smoothly by guaranteeing an exporter against non-payment and an importer against non-delivery. Therefore, the parties to a sale apply UCP500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to look to their own legal stability. However, we may recognize some cases to have been applied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one of the dominant principles of the civil law,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other cases to have not been applied that principl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Court shall apply UCP500 strictly as long as the parties concerned adopt UCP500 in view of the legal stability. In other words, in case that the Court applies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to the case related to L/C, this rule -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should apply to the subject matter which have not stipulated in UCP500 under certain restriction.

We suggest keeping in mind points to korean companies as follows: First, the parties to a sale shall understand L/C basis transaction and principles related to L/C deeply. Second, the exporter shall prepare documents in compliance with L/C and fulfil his or her obligation according to UCP500 and L/C related to the contract. Third, as buyer or importer, when he or she receive the shipping documents with discrepancies from the notifying bank, he or she makes him or herself clear to all the parties concerned.

Fourth, as bank, she shall examine all the documents according to UCP500 and L/C related to the contract, and if any document with discrepancies, the bank, by all means, shall approach applicant first, and then decide whether to pay the credit amount to beneficiary or not to.

Key Words : UCP 500,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L/C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